



2016 제1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6. 5 (제30권 제1호)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Date Violence’ and the Issues of Response.

강 용 길* · 박 재 풍** · 박 원 규*** · 이 춘 삼****

차 례

I. 서 론	IV. 데이트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우리나라의 ‘데이트폭력’ 실태 및 법제도 추진 현황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된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들을 마련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데이트폭력’의 개념화를 검토하여 법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둘째, ‘데이트폭력’의 원인과 관련된 범죄이론들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대응방안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셋째, ‘데이트폭력’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국내 법제도를 고찰하여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사후대응방안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각종 대응프로그램의 국내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체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면 ‘데이트폭력’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방안은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법률제정 및 제도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이 일반폭력범죄의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보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강화해야하는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가 단지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감소에만 집중되기 보다는 전반적인 범죄와 위협의 효과적인 예방과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접근되기를 희망한다.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법정책임연구실 연구관(제1저자)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법정책임연구실 연구관(교신저자)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법정책임연구실 연구관(공동저자1)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법정책임연구실 연구관(공동저자2)

I. 서론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데이트폭력, 괴물이 된 남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데이트 폭력과 이별범죄가 소개되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이 지난 10년 간(2005~2014) 매년 평균 7,150여 건 발생하고, 전과자의 비율은 76.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¹⁾, ‘데이트폭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과 함께 적절되어야 하는 주요 사회악으로 평가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전국 모든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처벌 TF’를 구성하고, 가해자 처벌에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예방에 중점을 둔 대응전략으로 전환하여, 2016년 2월 3일부터 동년 3월 2일까지 1개월 간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밝혔다.²⁾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정서적 친밀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찰이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는 경찰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된 법제도의

1) 김정우, “‘데이트 폭력’ 남성 77%가 전과자... “전과정보공개 제도 도입 필요”, <http://www.hankookilbo.com/v/7c2628c5c45c4e1d8d8a9e7684eb35f0> (2016. 2. 3 검색)

2) 연합뉴스, “‘접근하면 처벌’... ‘형사의 경고’로 데이트폭력 차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2/0200000000AKR20160202080651004.HTML?input=1179m>(2016. 2. 3 검색); 경찰청 내부문서(2016. 2. 3 일일업무보고).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들을 마련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데이트폭력’의 개념화를 검토하여 법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둘째, ‘데이트폭력’의 원인과 관련된 범죄이론들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대응방안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셋째, ‘데이트폭력’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국내 법제도를 고찰하여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사후대응방안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각종 대응프로그램의 국내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체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정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폭력의 유형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폭력의 수법 및 방식의 진화를 고려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행동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이란 ‘서로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을 의미하며, 연인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한다.³⁾

이러한 개념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표 1〉 데이트 폭력의 유형

종 류	행 태
신체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을 꼬집거나 비트는 행동 • 거칠게 밀거나 힘껏 움켜잡는 행동(목을 조름) • 때리는 행동(뺨을 때리거나, 주먹이나 발로 때림) • 물건을 이용한 폭행(던지거나, 흥기로 위협,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힘)
정서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적 폭력(욕이나 모욕, 비난, 고함, 위협, 악의에 찬 말 등) • 심리적 폭력(상대방의 소유물을 만지거나 부수는 것,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는 것)
성적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강제 키스 또는 애무) •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요구(위협, 흥기사용)
행동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게 함 • 핸드폰, 이메일, 개인블로거 등 점검 • 옷차림, 모임 등 제한, 특정 행위 강요, 행동 및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행위

※ 출처: 홍영오 외, 2015, 48~49쪽 내용 편집

이와 함께 ‘데이트폭력’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몇몇 유사 개념들과 혼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유사 용어와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유사한 개념의 용어로는 ‘가정폭력’과 ‘스토킹(stalking)’이 대표적이다.

- 3) 홍영오 외 (2015)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8쪽 ; 장민선(2015) “데이트 폭력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법제이슈브리프 Vol 9. 의 개념정의에 의함. 경찰청에서는 ‘연인 간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을 말한다.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구성원은 현재 또는 과거에 법률적·사실적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데이트폭력’의 당사자인 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은 ‘데이트폭력’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당사자들 간의 정서적 또는 감정적 친밀성 수준이 비슷하여 ‘가정폭력’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유형 및 방법 등이 유사하고, 추후에 검토하게 될 미국과 영국에서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대응방식 등이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stalking)’이란 ‘일정기간 동안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정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병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행위는 ‘데이트폭력’의 한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연인관계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점, 범죄실행단계(기수와 미수), 적용 법률, 가해자 조치 및 처벌수준에 있어서는 차별화되는 개념이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개념적인 구분 필요성이 있다.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

5) 황성현 외, 한국 범죄심리학, 피앤씨미디어, 2015, 391쪽.

〈표 2〉 데이트 폭력과 유사 개념 비교표

구 분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개 념	서로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정기간 동안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정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
당사자 관계	연인	가족	불특정(연인 포함)
관련 법률	형법 및 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또는 형법	경범죄처벌법
가해자조치	범죄행위 처리절차 및 해당조항 벌칙에 따름	응급조치(범죄수사,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임시조치, 보호처분 + 범죄행위 처리절차 및 해당조항 벌칙에 따름	통고처분 (범칙금 8만원)
피해자조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응급조치(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 및 지원	없음

2.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

1) 가해자의 심리형성에 관한 이론

(1)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사회학습이론은 어릴 적에 폭력적 학습을 많이 경험하면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폭력성이 증가하며,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 및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⁶⁾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 학습은 폭력을 합리화하는 경향(중화 기제)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⁷⁾

(2)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 Theory)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대상과 적극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이때 외부대상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대상을 극히 악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경계성 장애의 특성이다.⁸⁾

Meloy(1998)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나 ‘스토커’는 바로 이 경계성 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⁹⁾ 즉, 최초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일단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지하게 되면 분노하면서 격한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성 장애에는 문제인식의 왜곡, 방어기제의 발동 및 가상과 현실의 불일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대상관계이론은 개인이 실제로 사람들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이 맺는 내적 대상과의 관계 및 내적 대상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이다.¹⁰⁾

6) 황성현 외, 앞의 책, 393-394쪽.

7) 박철현 · 진수명 · 이상용, “스토커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 원호택, 이상심리학, 박문사, 1997.

9) Melony, J. R., *The psychology of stalking: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 (SanDiego: Academic Press), 1998.

10) Greenberg, J. R. · Mitchell, S. A.,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3)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애착은 특정 인물과의 강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 애착은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안정 또는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유아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인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¹¹⁾ 이러한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Bartholomew는 성인의 애착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유형들을 통해 ‘데이트 폭력’과 ‘스토커’의 심리적 특성인 불안감, 질투 및 분노와 같은 불안전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가해자의 심리적 특징 및 동기유발과 관계가 있는 유형은 불안 저항형과 불안 혼란형으로 스토커 모집단 중 55%가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로 인한 불안정 애착력을 가지고 있고, 63%는 유년시절 이혼, 별거, 유기, 수감 또는 사망 등으로 보호자가 중도에 바뀌는 경험을 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¹²⁾

2) 피해자의 관계지속 심리에 관한 이론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지 못하고 지속하는 것일까?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이 있는 경우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는 피·가해자의 성향, 개인이 살아온 경험과 역사, 그리고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관계지속의 원인을 주로 개인적인 기질 또는 심리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11) Lewis, S. F. 외, “An investigation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alker: Empathy, problem solving,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Vol. 46, No. 1, pp. 80-84, 2001: 황성현 외, 앞의 책, 395쪽 재인용.

12) Kienlen, K. Birminham. 외, “Comparative study of psychotic and nonpsychotic stalking”,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Law*, Vol. 25, No. 3, p. 320, 1997.

를 유형으로는 개인적 특성모델, 긍정적 보상모델, 투자모델, 투자모델과 이타적 망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적 특성모델

‘개인적 특성모델’은 피해자의 기질적인 특성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지속한다는 주장으로, 피해자들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다.¹³⁾ 그러므로 개인의 기질이나 특성을 분석하기보다 파트너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폭력적인 관계의 지속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⁴⁾

(2) 긍정적인 보상모델

‘긍정적인 보상모델’은 관계에 의존적인 여성들이 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반성이나, 선물, 용서를 구하는 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용서함으로써 데이트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은 폭력을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상호관계에만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 개인과 주변 환경 간의 관계를 간과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¹⁵⁾

13) Rhatigan, D. L. & Street, A. E., “The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decisions to leave dating relationship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0, No. 12, 2005, pp. 1580-1597. ; 이정은, 폭력적 데이트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타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7, 7쪽에서 재인용

14) Rusbult, C. E., Martz, J. M. & Agnew, C. R., “The investment model scale: Measuring commitment level, satisfaction level, quality of alternatives, and investment size”,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1998, pp. 357-391. ; 강효진,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2009, 11쪽에서 재인용

(3) 투자모델

투자모델은 개인이 데이트 관계에 얼마나 투자했으며,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냐를 바탕으로

파트너에게 어느 정도 헌신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관계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¹⁶⁾

(4) 이타적 망상

이타적 망상(altruistic delusion)이란 폭력적인 파트너를 떠나지 못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희생하면 폭력적인 파트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 생각이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생각이며 이러한 신념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해도 고수한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폭력 피해 여성이 폭력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기존 이론보다 관계지속과 종료에 자발성이 있다는

15) Dobash, R. E. & Dobash, R. P.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New York, Free Press, 1970 ; 김정란,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99, 11쪽에서 재인용

16) Rusbult, C. E.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5, No. 1, 1983, pp. 101-117. ; 이정은, 폭력적 데이트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타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7, 8쪽 ; 강효진,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2009, 11쪽에서 재인용.

17) 이정은, 위의 논문, 9쪽.

전제하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심각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인 경우는 공포와 무기력이 크기 때문에 폭력이 심각한 경우 관계 지속 이유의 자발성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

‘스톡홀름 증후군’은 1973년 8월 23일에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Stockholm Normalmstorg)에 있는 크레디트반켄(Kreditbanke)이라는 은행에 강도 사건을 보고 스웨덴 심리학자인 닐스 베예로트(Nils Bejerot)가 처음 사용했다. 이 6일 동안 무장한 강도와 은행 직원들이 같이 지내면서 애착 관계가 형성됐다. 경찰과 협상이후 은행 직원들이 풀려날 때 강도들과 포옹과 키스까지 하는 모습에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심리적 유대감의 과정을 보면, 가해자가 너무 강한 언어와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스스로의 자아를 보호하려고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눈물을 보이거나, 가해자에게 침묵을 통해 더 강한 언행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기처럼 보이면서 가해자로 하여금 ‘보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폭력을 동반한 감정’으로 습관적인 폭력성을 더욱 지속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Ⅲ. 우리나라의 ‘데이트폭력’ 실태 및 법제도 추진 현황

1. ‘데이트폭력’ 실태분석

1) 공식통계의 발생 현황

‘데이트 폭력’에 관한 공식통계는 경찰청의 최근 5년(2011~2015) 간의 범죄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에 의하면 연인 간에 발생한 폭력의 유형 중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폭행-상해-특수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살인의 순서이다.

〈표 3〉 연도별 연인 간 폭력 현황

(단위: 건)

연도	폭행	상해	특수폭행	성폭력	살인	계
2011	2,633	3,074	1,068	390	127	7,292
2012	2,822	3,028	1,226	409	99	7,584
2013	2,848	2,571	1,179	533	106	7,237
2014	2,702	2,273	1,109	483	108	6,675
2015	3,670	2,306	1,105	509	102	7,692
계	14,675 (40.2)	13,252 (36.3)	5,687 (15.6)	2,324 (6.4)	542 (1.5)	36,480 (100)

※ 출처: 경찰청(2016)

한편, 위 중요범죄 외에도 연인 간에 발생한 손괴도 매년 평균 1,000건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¹⁸⁾

이와 함께 ‘스토킹’을 의미하는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통고처분 및 즉심건수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인 2013년 312건에서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으로 나타났다.¹⁹⁾

18) 홍영오 외, 앞의 책, 2015.

19) 경찰청,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대응 강화계획, 경찰청 수사국, 2016.

2) 상담을 통한 발생 현황

‘데이트 폭력’의 발생 현황은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통계 및 분석(2014)」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⁰⁾

첫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20대가 26.5%, 30대 15.8%로 많았고, 가해자는 30대가 13%, 20대가 10.7%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전 연령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포되어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폭력의 유형은 언어 및 심리적 괴롭힘을 포함한 정서적 폭력(81.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체적 폭력(52.1%), 성적 폭력(38.6%)의 순서였다.²¹⁾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57%로 조사되었다.

셋째,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인 경우가 전체 상담건수의 95%를 차지하였으며, 애인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는 전체 상담 피해사례의 70.7%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데이트 폭력’의 피해상담을 통해 확인된 폭력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대부분은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가해자와의 이별을 시도하지만 가해자는 폭력의 내용과 형태를 변형하면서 피해자의 관계중단 의지와 행동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결과를 종합하면,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동반하며, 피해자의 관계단절 노력은 가해자의 폭력형태의 변화로 좌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

20) 이에 따르면 2014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상담 중 애인/과거 애인, 채팅상대자 등 데이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폭력 건수는 215건이었다.

21) 피해유형의 비율은 복수응답에 따른 것임.

은 “‘데이트 폭력’이 연인 간의 ‘사랑싸움’으로 취급되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가해자 특성²²⁾

공식범죄통계상에서의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자의 특성은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의 항목 중 범죄자의 피해자의 관계에서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가해자들의 76.6%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과는 위 4가지 범죄유형의 동종전과가 34.5%, 이종전과는 57.8%였다. 재범기간²³⁾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4가지 유형의 범죄 중 재범기간이 3년간 초과한 경우가 36.9%로 가장 높고, 다음은 1년 이내가 20.4%, 2년 이내가 14.0%, 3년 이내 12.7%, 6개월 이내 6.6%, 3개월 이내 6.1%, 1개월 이내 3.3%로 나타나 전회처분이 종료된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대부분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봐도 매년 3년을 초과한 경우가 가장 높아 35%~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로도 큰 차

22) 홍영오 외(2015) 연구에서 부분 발췌.

23) 재범이란 본건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재범기간은 전회 처분 내용과 관련시켜 계산하며, 직전의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재범행위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김지선·홍영오, 2015).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회처분²⁴⁾ 내용을 살펴보면, 형의 집행종료가 53.9%로 가장 많고, 기소유예는 6.4%였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발생 당시 집행유예 중인 경우는 1.4%로 비교적 낮은 비율이었다. 전반적으로 10명 중 2명 정도만이 전회처분이 없는 초범인 것으로 드러나 연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본 건 직전에 처분이나 집행상황에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둘째,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약 48.4%가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행 시 정신상태를 살펴보면, 정상인 경우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51.0%로 절반 정도였으며, 주취 상태인 경우가 48.4%로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이상(장애)인 경우가 0.3% 정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취상태 인 경우가 2005년 47.2%에서 2009년 47.7%에 이르기까지는 46%~48%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에 49.2%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48%~50%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전에 비해 최근에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에는 48.4%로 전년의 50.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셋째,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54.9%로 가장 높았으나, 가정불화가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22.6%에 이른다. 현실불만이 2.5%로 확인되었다.²⁵⁾

24) 전회처분이란 본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을 뜻한다. 즉 범행당시 이전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받은 처분의 내용이나 그 집행상황이다. 따라서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회처분이 없는 범죄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타에 포함된다. 가석방은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입력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집행종료에 포함된다(김지선·홍영오, 2015).

넷째, 가해자 90%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라도 자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의 범행 후 자백여부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자백한 경우가 60.4%로 가장 높고, 일부 자백 32.7%, 부인 6.4%, 묵비권 행사 0.1%로 나타났다.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백한 경우는 2005년 60.0%에서 2014년 65.4%에 이르기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09년 이전에 비해 이후에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일부 자백의 경우에는 2005년 33.8%에서 2008년 41.8%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4년 25.4%에 이르기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인한 경우는 2005년 5.8%에서 2014년 8.1%에 이르기까지 증감이 반복되긴 하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26.1%에 이른다. 전체 범죄자 중 현행범 체포비율은 통상 8 ~ 10% 내외이고, 형법범의 경우 현행범 체포비율이 14~15%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범 체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가해자에 대한 체포상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자 중 긴급 체포된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현행범 체포 26.1%, 사전 영장 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현행범체포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긴급체포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가정불화로 인한 범죄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갑자기 3%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 범죄통계 상 가정불화로 인한 우발적 범죄로 통계수집기법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데이트폭력’ 관련 법제도 추진 현황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²⁶⁾ 행위결과에 대한 처벌은 일반 법률로 가능하므로 특별법으로 제정되기에는 논거가 충분하지 않다(박현정, 2015).²⁷⁾ 그러므로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보다는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과 같은 유사개념에 관한 기존 법률과 현재 추진 중인 ‘스토킹’관련 특별법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존 법률의 검토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는 기존 법률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범죄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첫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데이트폭력’과 관계가 있는 부분은 법률의 적용대상과 현장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다.

이 법의 대인적 적용범위를 의미하는 ‘가정구성원’은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법 제2조 2의 가목).’고 규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실혼’이란 부부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사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26)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법률적·사실적 방법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이는 ‘가정폭력’의 대상범위가 가족구성원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과 차별화된다.

27)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22권 2호, 2015, 499-521쪽.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와는 구별되며,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동거하지 않는 '법률혼'과도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는 일반적인 배우자를 의미하는 '법률상 배우자' 및 '단순 동거자'와는 차별되나, '데이트폭력'의 당사자인 '친밀한 관계의 연인'의 한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제한적이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이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인 간의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는 폭력제지를 위한 현장조치로 '경찰의 응급조치'가 있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 및 대응 법제도기반을 마련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는 '지속적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항목은 2012년 3월에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신설되었다(강용길 외, 2015: 138).²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의 70.7%가 애인 등 연인 관계에서의 '스토킹'이었다는 점에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 증가와 이에 대한 단속 및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스토킹'관련 법률들이 발의되었으나 단일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

28) 강용길 외, 생활안전경찰론, 경찰대학출판부, 2015, 138쪽.

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벌칙은 8만원의 범칙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으로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관계단절을 위한 제재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 특별법 제정 추진

(1)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년 2월 박남춘의원 대표발의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응용하여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가해자의 환경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들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16년 2월 기준으로 ‘스토킹’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의안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²⁹⁾ 이 3개 법률안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

롭히는 행위(스토킹)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형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폭력유형의 시도(또는 개시)는 없으나 개인의 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스토킹’을 법률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다.

‘스토킹’은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데이트 폭력’은 관계에 중점을 둔다는 점, ‘스토킹’에 대한 정의를 ‘데이트폭력’에 모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토킹’ 관련 특별법을 ‘데이트폭력’에 관한 법제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예방 및 현장대응, 가해자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들이 ‘데이트폭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 관련 법제화 가능성은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최근 발의된 남인순 의원 대표 법률안의 내용 중 ‘데이트 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제3조(신고 및 현장조사), 제4조(응급조치 등), 제5조(신변안전조치), 제6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8조(피해자보호명령), 제10조(임시보호명령), 제12조(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3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4조(전담재판부), 제15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16조(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해당된다.

29) 발의된 법률은 ①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15. 2. 13. 발의), ②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스토킹 방지법안, 2013. 6. 19.), ③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2. 8. 27.) 등 총 3개이다.

IV. 데이트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감정으로 연인관계를 형성한 이후 상대방의 의사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기간이나 주체가 한정된 폭력 범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단순히 짧은 기간의 특정 대상에 대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 개인의 삶의 과정과 연결되어 스토킹-가정 폭력-아동학대 등으로 이어지며 주변인은 물론 자신의 가족에게 범죄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통합적 대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데이트 폭력’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주요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³⁰⁾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데이트폭력’예방 및 대응에 대한 법제도 방안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폭력전과 조회 통보제(일명 「클레어법」)’ 도입가능성 검토

1) 제도의 개요³¹⁾

30) 장민선, “데이트 폭력예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법제이슈브리프 Vol 9, 2015; 박응광,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4권 3호, 2015, 75-98쪽 ;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22권 2호, 2015, 499-521쪽.

최근 ‘데이트폭력’ 사건들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클레어법」으로 불리는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데이트파트너의 과거 전과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의할 권리(right to ask)’와 ‘알 권리(right to know)’를 기반으로 공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위험도를 측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문의할 권리를 통해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 폭력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사전적으로 범죄전과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알 권리를 통해 경찰 등 보호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 폭력전과가 있는 자가 연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기초조사-대면면담-종합위험성심사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지역 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폭력방지조언협회 등의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the local decision-making forum)의 심의를 거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2)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검토

최근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 전과공개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³²⁾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31) 홍영오 외(2015)의 보고서 내용 중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편집한 것임을 밝힌다.

32) 2016년 2월 1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영국의 ‘클레어법’같은 경찰 자체적인 제도 도입, 운영을 언급하였으며, 이후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1) 가정폭력에 대한 전과공개에 대한 기대효과는 범죄의 사전 예방일까? 당사자 간 갈등유발로 인한 또 다른 위협의 유발일까?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잠재적 피의자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면담을 통한 위험도 확인 및 예방정보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범죄예방효과가 기대되며, 범죄 예방을 위해 전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경찰의 법적 권한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려 지역사회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데이트상대방에 대한 전과공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사실상의 관계단절을 유도하여 잠재적 폭력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단절과 폭력예방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대응은 전적으로 정보신청자 또는 그 가족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과정이 상호간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에 의해 반드시 긍정적인 문제해결로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상호간에 발생한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과거의 범죄경력에 의해 관계단절이 요구된다면 데이트 당사자 간의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어 심각한 범죄결과 또는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과연 범죄의 사전예방의 효과와 전과공개로 인한 범죄유발의 효과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을까?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제도를 시행한 영국에서 제도시행에 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3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 간 전국 43개 경찰서에서 제도를 시행하여 총 4,724건의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되어 이 중 1,938건이 공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³³⁾ 그리고 이에 대해 경찰관서와

협력기관 그리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등은 제도시행에 긍정적이고,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공개결과 데이트당사자들 간의 관계유지여부, 공개된 사안들에서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보고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과 정보공개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2)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은 폭력전과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영국의 제도에서는 신청접수가 되면 24시간 내에 피해내용과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조사 후 10일 내에 신청자에 대한 대면면담을 통해 신청의 목적과 정황을 파악하며, 대면면담 후 10일 내에 과거 전과경력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종합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접수에서 종합위험성평가가 지 최대 21일이 소요되는 것이다.

위험성의 판단시점은 현재 또는 미래가 될 것이고, 판단기준이 되는 조사 자료는 과거의 사실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데이트폭력'과 상관관계가 많은 전과사실이 매우 상습적이고, 상황 및 수법이 비슷하다면 이는 폭력습관의 가능성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지 않고 현재나 미래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국가

33) UK Home Office, 2016, DVDS 1 Year On-Assessment of National Roll-out: 경찰청, 2016, 연인간 폭력관련 전과공개제도 도입검토, 재인용

의 안보와 공공의 위협이라는 공적 영역에서의 위협이라면 그나마 공적 이익의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사적 관계에 기초한 정서적·감정적·주관적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한 위험성 판단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기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또는 미래의 데이트폭력위험성을 파악하여 실제 범죄 예방의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과거 범죄사실에 대한 다양한 요인(원인, 관계, 상황 등)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폭력성향의 수준이 판단되는 측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분석하여 현재 및 미래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정폭력 전과공개제도'의 국내 도입은 당사자 간의 갈등 유발과 이로 인한 범죄발생가능성 문제, 위험성판단에 대한 신뢰성 확보, 경찰권의 사적 영역 개입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트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제화 방식 검토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과 직접 관련된 법제가 없으므로 유사개념인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적용범위를 데이트폭력까지 확대하여 이 제도를 규정하는 방안과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또는 「스토킹관련 특별법」에 제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방안

가정폭력특례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폭력특례법 목적(제1조)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가꾸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이 아닌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예방이 이 법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데이트폭력’ 중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섭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동거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고, 혼인의 의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데이트폭력’의 연인 관계와는 차별화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가족구성원’에 포함시키기에는 법률적용의 대상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법률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왜곡될 가능성(가정의 보호에서 일반적인 여성의 보호로 목적이 변경)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법률에 제도를 규정할 경우 법률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방안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내용 등이 기존 유사(가정폭력, 스토킹)범죄에서 다루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형벌 이외의 조치-형벌조치는 일반 형법 및 특별법에서 행위결과에 대한 벌칙으로 적용가

능)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 데이트폭력의 가해자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규정에 앞서 법률제정의 실익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즉, “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응이 다른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구별하여 가해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호를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남녀 친구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차별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3) 「스토킹관련 특별법」 제정 방안

스토킹 관련 특별법에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포함시켜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추진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스토킹이 행위중심이고 일반적인 형법의 벌칙이 행위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관계중심인 데이트폭력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발제된 법률의 내용에는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보호에 적용할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트폭력’을 포함시킨다면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법률명은 「스토킹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가칭)」으로 한다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장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존 법률 개선방안 검토

앞서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요 전략에 대한 논의들은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의 제도 및 특별법 등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률 및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절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논의과정에도 각 부처, 부서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률 및 제도의 도입을 진행하면서, 기존 법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경범죄처벌법」의 개정방안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개연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규제 법안이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지속적 괴롭힘’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은 8만원의 범칙금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속적 괴롭힘’의 행위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범행현장 또는 사후조치에 있어 통고처분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경찰활동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지속적 괴롭힘’은 다른 범칙행위와 달리 후속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점과 현장에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및 체포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⁴⁾

34)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서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의 체포와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규정으로는 가해자의 주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 체포가 불가하다. 이는 ‘데이트 폭력’과 연계된 ‘지속적 괴롭힘’의 경우 연인(애인)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주거불명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현실적으로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모든 범죄행위 또는 위험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제지하고 조치하는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현재의 법률안 제2조에는 경찰관이 수행해야하는 직무를 적시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범죄관련 직무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의 구체적인 수행방식으로는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의 법률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들은 위와 같은 직무방식의 수행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규정들이 범죄예방 및 대응에서 실효성이 담보되는가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법 제4조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경우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을 동일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 또는 위험상황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강제조치와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의조치가 그것이다. 그리고 임의조치 대상자가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 포괄적인 반면,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한 강제조치 대상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으로 제한적인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서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 될 때’ 경고와 제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범죄의 발생시점과 매우 근접한 시점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경고

현장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와 제지라는 실질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범죄 및 위험에 대한 예방은 징후에 대한 사전 예측과 신속한 현장조치를 통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경찰의 기본임무인 범죄예방과 제지,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등이 경찰개입의 최소화라는 원칙으로 인해 사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법률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모든 범죄 및 위험 발생상황에 대해 '설득→경고→제지→격리→보호조치'의 조치들이 경미한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직무수행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서 '목전'의 위해행위에 한정된 것을 '위해가 야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의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보호조치 중 강제조치의 대상을 기존의 '정신착란자·주취자·자살기도자'에 '위해야기 우려자 및 위해야기자'를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해야기우려자 및 위해야기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점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호조치 처분은 기존의 조치방식(강제 또는 임의조치)을 보다 구체화하여 주취자·정신착란자·자살기도자 등은 실질적인 구금형태의 강제조치에서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인계로, 미아·병자·부상자 등 임의조치는 보호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경찰관 서에서의 일시보호 또는 보호기관(시설) 인계로, 판사의 보호조치 적법성 판단 시에는 유치·접근금지·위탁상담 등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한 보호처분의 일부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데이트폭력 사전예방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방안

1) 상담 및 보호지원 확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시설은 2014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전국에 29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구분	개소	비고
성폭력상담소	172	일반 149, 장애인 2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5	일반 15, 장애인 7, 특별지원 2, 자립지원 1
해바라기 아동센터	8	
해바라기 여상아동센터	8	
원스톱지원센터	1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	
스마일센터	6	
합계	295	

※ 출처: 여성가족부, 법무부(2015); 남인순 외(2015)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안, 재인용

이와 함께 민간에서 운영되는 상담기관으로 ‘한국여성의 전화’가 있다. 전국에 상담소 32개소와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쉼터를 10개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83년에 설립되어 후원 및 기부금 그리고 교육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 교육,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³⁵⁾

위와 같이 '여성폭력'에 관한 다양한 상담기관들이 설치되어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에 대해 여성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보호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경찰에서 인지한 매년 7,000여건 이상의 '데이트 폭력'과 평균 350건의 '스토킹'에 대한 관심과 상담의 증가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상담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별로 상담 및 보호지원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에 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확대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문제에 대한 상담은 범죄피해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지원 시스템을 지지한다. 하지만 남성들도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폭력심리를 억제하고 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폭력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남성의 전화(가칭)'를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 상담기관과 경찰의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경찰청은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대응 강화계획'에서 '적극적 신고 접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담요청 및 피해신고 시 초기 대응에서 신고 즉시 현장 출동과 피해사실 확인 및 가·피해자 분리 등의 초기대응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에 관한 상담기관들은

35) (사)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http://hotline.or.kr/aboutdateviolence> (2016. 2. 7. 검색)

폭력의 사실이 상담을 통해 확인되더라도 상담자에게 신고를 권유할 뿐, 경찰에 폭력사실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경찰의 폭력상담내용에 대한 정보공유요청은 상담내용의 비밀 준수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다.

남기순의원외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누구든지 스톱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와 ‘신고 받은 사범경찰관리는 신고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 및 현장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비록 상담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도 폭력 등 범죄의 발생 및 위험성이 높은 상담내용은 개인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범죄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 안전 및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경찰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폭력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접수한 경찰이 이를 바로 수사의 절차와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2차 상담의 형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상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대응하는 사전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전담 117상담’의 방식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 학교 및 직장 범죄관련 의무교육프로그램 활용방안

우리 사회에서 범죄로 인식하기 쉽지 않고 잘 발견되지 않는 일상적인 행위들(성희롱, 학교폭력 등)이 피해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직장 또는 학교에서의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들이 법률로 의무화되고 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매 학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이행에 따른 제재규정은 없다.

위와 같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성희롱’과 ‘학교폭력’의 예방교육프로그램에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예방과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피해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또는 법률제정 시 교육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4) ‘고등교육법’의 지원을 받는 대학 캠퍼스범죄 집계 및 보고 의무화

홍영오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20.6%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2013)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며, 대학생은 전체 약 250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 대학생들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 신분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당국에서는 학생들의 범죄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소위 ‘입시지옥’이라는 고등학교 시절을 벗어나 대학생이 되면서 갖게 되는 자유와 권한 중 하나는 이성 관계에 관한 자

유로운 선택과 결정일 것이다. 이로 인한 범죄문제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은 2013년 「여성폭력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각 대학들이 「고등교육법」 상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대학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발생 건수를 집계하여 매년 교육부에 보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등을 입안하여 역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³⁶⁾

‘데이트 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학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의 발생 현황 및 대학생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범죄예방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적용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V. 결 론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위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전과 공개제도’의 도입은 제도시행의 긍정적·부정적 기대효과가 공존하고 있으며, 현재 및 미래의 위험성판단 요인들의 정확성과 분석의 전문성의 확보문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경찰권의 개입수준에 대한 공감대 사전형성 등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적 근거의 마련에 대한 논의에서 법제화의 방식은 외국과 같이 기존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36) 장민선,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제7권 2호, 2015.

등에 관한 특별법」에 ‘데이트폭력’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과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다. 법률의 목적과 적용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법률의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데이트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 및 현장 대응이 중요하고, 일반적인 폭력피해의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 가해자 제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제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직무수행 범위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상의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데이트폭력의 사전예방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각종 예방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방프로그램으로는 상담 및 보호지원의 확대, 상담기관과 경찰간 정보공유 강화, 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범죄 실태보고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데이트폭력’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방안은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법률제정 및 제도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이 일반폭력범죄의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보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강화해야하는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가 단지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감소에만 집중되기 보다는 전반적인 범죄와 위협의 효과적인 예방과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접근되기를 희망한다.

◆ 주제어(Key Words): 데이트 폭력(Date Violation), 스토킹(Stalking),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경찰직무집행법(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사전예방(Proactive Prevention).

〈논문 접수 : 2016. 4. 16, 심사 개시 : 2016. 4. 20, 게재 확정 : 2016. 5. 20〉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강용길·김현정·이영돈, 생활안전경찰론, 경찰대학출판부, 2015.

원호택, 이상심리학, 박문사, 1997.

황성현·이창한·이강훈·이완희·한우재, 한국 범죄심리학, 피앤씨미디어, 2015.

2. 논문

강효진,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서울, 2009.

김정란,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1999.

류병관,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4.

박응광,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4(3), 75-98쪽, 2015.

박철현·이상용·진수명,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박현정,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22(2), 499-521쪽, 2015.

장민선, “데이트 폭력예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법제이슈브리프 Vol 9, 2015.

장민선,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7(2), 1-32쪽, 2015.

홍영오·연성진·주승희,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II. 외국문헌

1. 단행본

Dobash, R. E. & Dobash, R. P.,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New York, Free Press, Handbook of Women, Stress and Trauma (p. 256). New York: Brunner/Routledge, 1970.

Greenberg, J. R. & Mitchell, S. A.,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Melony, J. R., The psychology of stalking: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 SanDiego: Academic Press, 1998.

2. 논문

Kienlen, K. Birminham, L, Solberg, B, Regan, T., & Meloy, R., “Comparative study of psychotic and nonpsychotic stalking”,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Law, Vol. 25, No. 3, p. 320, 1997.

Lewis, S. F., Fremouw, W. J., Ben, K. D., & Farr, C., “An investigation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alker: Empathy, problem solving,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6(1), 2001.

Rhatigan, D. L. & Street, A. E., “The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decisions to leave dating relationship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2), pp. 1580-1597,

2005.

Rusbult, C. E., Martz, J. M. & Agnew, C. R., "The investment model scale: Measuring commitment level, satisfaction level, quality of alternatives, and investment size",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pp. 357-391, 1998.

II. 기타자료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안, 경찰청 생활안전국, 2015.

경찰청,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대응 강화계획, 경찰청 수사국, 2016.

김정우, '데이트 폭력' 남성 77%가 전과자... "전과정보공개 제도 도입 필요", 한국일보, 2016.

김제남 외, 스토킹 방지법안, 2013.

남인순 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안, 2015.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 ~ 2015.

(사)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http://hotline.or.kr/aboutdateviolence>.

연합뉴스, "접근하면 처벌"...형사의 경고로 데이트폭력 차단, 연합뉴스, 2016.
2. 2.

이낙연 외,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2.

< ABSTRACT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Date Violence’ and the Issues of Response

Kang, Yong-Gil · Park, Jae-Poong ·
Park, Won-Kyu · Lee, Chun-Sam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to provide a continuous and systematic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measures by discussing a solution and examin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legal framework relating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dating violence”.

To do this, First,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literature analysis of relevant theory we clearly define the application and scope of the legal system of “dating violence”. Second, we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ractical countermeasures by organizing crime theories associated with “dating violence”. Third, we propose a legal limit and improvement by considering the domestic legal system is related to the “dating violence”, Fourth, we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he various national response program that focuses on proactive rather than reactive measures, and propose the cooperation measures.

And to compound the problem, to prevent and response the “dating violence” effectively, we have to improve quickly and proactive approach based on the existing laws and institutions. And social consensus about additional legislation and introduction of system should be settled in the light of our legal and institutional realities.

We hope to increase the interests of effective general crime and risks prevention rather than being focused on only “dating violence” prevention.